

2026년도 제2회 서울구로우체국 공무직 우체국소포원 채용 공고

서울구로우체국에서 우체국택배 및 국제특급우편물 방문접수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직 우체국소포원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3.

서울구로우체국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역)	담당업무	비고
공무직 우체국 소포원	1명	서울구로우체국 (서울시 구로구)	○ 우체국택배 및 국제특급우편물 방문접수, 기타 부대업무	

2. 근무 조건

○ 신 분 : 공무직 근로자(비공무원)

- 최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종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 수 : 기본급 + 수당

- 기본급 : 2,003,770원
- 수당 : 온전수당, 직무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급식비 등

- 실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시출장여비 등
- 기타 :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맞춤형복지제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등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 당일업무 및 업무량 변화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휴가 :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 근무기간에 따라 상이함

○ 업무특성 : 태국인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

택배차량(수동형 1톤 탑재 포함)을 직접 운전하여 최고 30kg의

우체국 소포·EMS 우편물 등을 방문 접수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 최종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 단, 권리 규정 제62조 제3항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 나. 자격증: 면접일 현재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택배차량(수동형 1톤 탑재) 운전이 가능한자

※ 교통 보통운전면허 「운전자면허」 면허 소지자는 수험료 10만 원이 운전면허 불합격하여 제외

- 다. 지역제한: 공고일 기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응시자격 제한
-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는 응시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판단기준항: 면접시험 최종 합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선일후건조
2. 피선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범칙금의 한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기가 상실되거나 정지된 지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강박행위방지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노조법」 제71조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조법범죄
- 6의4. 「아동학대 방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아동·청소년학대범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말간 이허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장료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함

4. 시험 방법

시험단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채용분야	서류전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우체국소포편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경력, 경력사유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나. 제2차 시험: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에 필요한 운전능력 검증
- 평가요소: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 자세, 조향 및 차체 감각,
돌발상황 대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성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외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서류 접수

- 가. 원서교부 : 서울구로우체국,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양식용 사용
- 나. 접수기간 : 2026. 7. 13.(월) ~ 7. 15.(수) 18:00까지 · 방문접수 시 09:00-18:00
- ※ 점심시간(11:30-12:30) 및 토·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함
- 다. 수신처 : 서울구로우체국 4층 거린과(서울시 구로구 금오로 931(원향동))
- 전자우편 접수 시 : jiwon431@korea.kr

-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전자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밴드시인접근으로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접수)
- ※ 우편접수 주소 : (우편번호 06369) 서울시 구로구 금오로 931 서울구로우체국 4층 거린과
 -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우체국소포된 응시원서』 표시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서식은 본 공고문에 첨부 양식 사용(자필서명 필수)
 -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표는 실기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당일 배부

※ 전자우편으로 응시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는 PDF·JPG 파일로 제출
※ 제출후에도 접수확인 문자가 오는 경우, 가만 내 서류부서를 통해 접수확인 여부 확인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가. 모집공고 : 2026. 7. 3.(금) ~ 7. 10.(금)
-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 7. 13.(월) ~ 7. 15.(수)
-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7. 20.(일)

- 라. 실기 및 면접시험 : 2026. 7. 22.(수) 시간·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은 단적으로 운영
 -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시험시간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임실 완료하여야 함
-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7. 23.(목)

- ※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바.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 모든 사항일정은 서울구로우체국 홈페이지에 게시

7.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 나. 이력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 다.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 마.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 바. 운전경력증명서 1부

- 면허발급 이후 **전체기간**의 운전면허경력, 범규위반, 교통사고 내역이 나타나야하며, 운전면허경력 란에 면허취득일자도 반드시 표기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사. 주민등록초본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주소변동 이력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하여 발급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2023.7.3)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명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서울구로우체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경력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서울구로우체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울구로우체국 방문신청,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 서울구로우체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라. 우체국소포원은 비공무원이며,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임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 우체국소포원은 비공무원이며, 근무경력에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

바. 접수마감 후 응시원인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은 경우는 원서검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경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하는 인력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구로우체국 지원과(02-6850-0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인력사항: 각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결구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응시직종은 응시원서에 기재한 직종과 동일하게 작성
2. 교육사항: 해당 사항을 기재
3. 근무 경력사항: 우체국 및 채용우대 근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기재
4. 직무관련 기타 활동: 해당사항 기재
5. 특기사항: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과장된 경우에는 합격여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 필수)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구로우체국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제2회 공무원 우체국소포인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어떠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합치 또는 무효가 되고 합후 5년간 응시자격이 상실되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울구로우체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가
응시직종	우체국소포인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주거등록주소)	()			
전자우편		응시권역	서울구로우체국	
전 화		후대전화		

가

응시번호		응 시 표	우체국소포인 채용시험	가
응시직종	우체국소포인	성명		
	20 년 월 일			
	서울구로우체국장 귀하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은 즉시 응시번호, 키, 체중, 사진위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원장을 가지고 소정서류 1지급, 관계부처 직원과도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관사람 _____ 를(을) 일 일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붙임 2】

표준이력서 양식

(양장)

1. 입력사항				
지원구분	신입() 경력()	지원분야	우체국소포인	접수번호
성 명	원()			
학주소	주()			
연차	(본인후대론)	전자우편		
	(비상면담자)			
2. 교육사항				
직무관련 직업교육	교육 과명명	주요내용	기연명	교육기간
3. 근무 경력사항 (지월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항 기입)				
근무기간	구세역 임종	직위/역할	담당업무	비 고
4. 윤리 및 정보화 관련 자격사항 (세종 자격요건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자격분류 : 국가공인자격일 경우 '국가공인', 민간공인 자격일 경우 '민간공인'으로 기재

(뒷장)

5. 학기사항 (학기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6. 안전관리사항 안내
<p>2차검이 확정된 경우 안전관리사항 중 공인면의 취소·장지, 공인사고, 업무위반 사항은 직무와 직속 관리가 있는 사물관로서 위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위와 같은 안전관리사항이 있는 경우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에 불이행이 있을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p>
<p>1.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2. 향후 위 기재 사항 중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누락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합격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거절일자: . . . 거절 자: (인)</p>

※ 본인 직위로 작성하며, 기재된 사항이 합격자 발표 이후 계약서 작성 시 제출된 자료와 대사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거나 허위 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용지가 부족하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용지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 3】

자기소개서

성 명	응시직종	수제약스펙
기 록 장 기		
생활실적의 가치관		
본인의 장·단점		
주요경력 및 학기사항		
합격 후 근무사항 및 기타 근무조건 근무환경에 대한		

※ 직무와 무관한 사항(경력, 연감필요사항, 실적(성과)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용지자의 부족으로 기재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용지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 . . . 작성 자: (서명 또는 인)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주민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사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구로우체국장 귀하

공차서봉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위급우편을 통해 전달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